

202년도 제6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

I 개최개요

- ☐ 일 시 : 2022. 12. 13.(화) 15:00~17:00
- ☐ 장 소 :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
- ☐ 참석현황 : 재적위원 19명 중 참석 13명, 불참 6명
 - 참석위원(13명)
 - 위원장 강현철, 위원 송다영, 위원 이영애, 위원 서정현, 위원 이정두, 위원 윤태웅, 위원 조현우, 위원 김경선, 위원 최길재, 위원 최수봉, 위원 조길수, 위원 박일충, 위원 이현구
 - 불참위원(6명)
 - 위원 홍기용, 위원 김규원, 위원 조병관, 위원 옥동석, 위원 임조순, 위원 이경녕

II 회의결과

☐ 보고안건 : 성립전경비 사용승인 내역 보고

○ 안전요지 [보고자:기획예산과장]

- 추진배경
 - 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성립전경비에 대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전 사용승인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가. 2022년도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예산편성지침

○ 주요내용

가. 기 간 : 2022. 9월(2회 추경 의결 이후) ~ 현재

나. 사용승인건수 : 7건

순 번	담당부서	건 명	편성액	교부기관
1	교수학습지원팀	K-MOOC 업데이트 비용	4,000천 원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2	대외협력과	인천시 장기차입금 원금	15,611,000천 원	인천시
3	취업역량개발팀	선예원 공간 이전 및 신규공간 구축	13,000천 원	발전기금
4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지정 발전기금 (회의실 개선)	30,000천 원	발전기금
5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인력 인건비)	1,227천 원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6	평생교육트라이버시티	강화캠퍼스 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3,421천 원	강화군
7	정책대학원	대외장학금	1,000천 원	중부재단
합 계			15,663,648천 원	

□ 보고안건 : 제물포캠퍼스 개발사업 추진 계획 보고

○ 안전요지 [보고자:캠퍼스기획안전과장]

○ 추진배경

가.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사업 민간 제안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안내용 개발 컨셉 설정 및 건축계획과 사업구조 제안이 충실히 이루어져 별도의 제물포캠퍼스 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자 함

○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경과

- 2020.02.17. :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 체결(인천대↔인천시)
- 2020.06.15. : 공유재산 무상양여 계약 체결(인천대↔인천시)
- 2021.08.24. : 제물포캠퍼스 개발 기본구상안 제출(인천대→인천시)

- 2022.03.02.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 제물포캠퍼스 221,298㎡ 중 상업용지 70,000㎡(31.6%) 반영
 - 2022.09.16.~2022.11.15. : 민간제안서 접수
 - 우대접수율 : 0% (가점 없음)
 - 제안내용
 - 공공시설용지 :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트라이버시티를 포함한 지역 주민과의 조화로운 개발방안 제시
 - 상업시설용지 :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실현 가능한 계획안 수립, 사업 실현 및 재무적 타당성을 고려한 개발안 제시
 - 2022.11.01. : 민간제안서 접수 <평가 결과 : 적격(PASS)>
- 나. 향후 추진계획
- PM(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총괄관리) 제도 도입

□ 제24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여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보고자:총무과장]

- 제안사유
 - 가. 공무원여비 준용규정 삭제 등 종전 규정 정비
 - 나. 물가상승에 따른 숙박비 지급 한도 상향
 - 다. 민간 연구과제 수행의 경우 재원이 다른 경우 예외조항 신설
 - 라. 과제 참여 연구원 여비 지급 근거 마련
 - 마. 교원, 연구원의 학회 및 학술회의 참가 출장시 지정 호텔이 있는 경우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과제 참여 연구원 출장 및 공무외 출장(학술대회 참가 등)에 대한
여비 규정 보완

(안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6조~제20조,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나.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기준 근거 보완

(안 제16조 제1항, 제3항~제6항)

다. 연구비를 재원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별도 지급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안 제19조 제1항)

라. 인천대학교 여비 규정 제19조 제2항을 제3항(『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으로 변경

마. 국내출장여비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 및 학회 및 학술회의 참가
출장시 지정 호텔이 있는 경우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3)

○ 심의결과 :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25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폐지안

○ 안전요지[보고자:인력개발팀장]

○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체계 정립을 위한 인천대학교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폐지가 권고된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을 폐지하고

나.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45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인천
대학교 직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 규정」 전부 삭제

○ 주요 질의 및 응답

- 규정류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은 교육연구위원회 및 평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무경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음
- 법체계 정비 후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재논의하기로 함

○ 심의결과 : 보류

□ 제26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보고자:총무과장]

-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체계 정립을 위한 인천대학교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폐지가 권고된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나.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45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폐지와 동시에 「인천대학교 직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 지침」 제정
1) 폐지 전 규정에서 변경된 사항
○ 용어의 명확화(안 제4조)
- ‘타 대학의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자’에서 타 대학의 용어 해석 시 「고등교육법」 제2조 적용

○ 주요 질의 및 응답

- 규정류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은 교육연구위원회 및 평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무경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음
- 법체계 정비 후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재논의하기로 함

○ 심의결과 : 보류

□ 제27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보고자:재무회계팀장]

○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체제정립을 위한 인천대학교 규정류 정비 추진계획 (법인지원팀-3393호, 2021.10.22.)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규정류 정비대상(권고사항)규정으로 분류되어, 권장사항을 반영한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무회계규정(계약부분)의 내용 중 “총장이 정한다” 부분이 모호하여 관련법 등을 준용하여 일부 개정

○ 제53조(입찰보증금)

○ 제55조(계약서의 작성)

○ 제66조(지체상금)

○ 심의결과 :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28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보고자:공동기기원장]

○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체제 정립을 위한 규정류 정비 및 보완

나.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운영 규정」 하위 지침으로,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운영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기원 이용시 필요한 양식과 절차를 지침에 명시

나. 동 규정 제8조에 따른 기기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추가

○ 심의결과 : 수정가결

당 초	수 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운영 규정」에 제11조에 의한 공동기기원 운영과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이용 및 절차) 공동기기원(이하 “기기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기원의 기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험분석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이용을 허가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기사용료 징수) ① 이용자는 의뢰한 실험·분석 등에 따른 기기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천대학교 내부 이용자에 한하여 기기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외부 대학 또는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공동기기원 운영 규정」에(삭제) 제11조에 의한 공동기기원 운영과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이용 및 절차) 공동기기원(이하 “기기원”이라 한다)의 시설을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기원의 기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험분석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이용을 허가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기(삭제)사용료 징수) ① 이용자는 의뢰한 실험·분석 등에 따른 기기(삭제)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삭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천대학교 내부 이용자에 한하여 기기(삭제)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외부 대학 또는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 제29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법인 설립·운영(안)

○ 안전요지[보고자:창업지원단장]

○ 제안사유

가. 우리대학의 창업지원 역량확대 및 창업지원 조직의 투자기능 강화
 나. 창업지원 사업영역 확대로 대학·창업기업 간의 이익공유 기반 조성
 다.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설립 및 대학투자펀드 운영으로 교내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의 재정확보에 기여

○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설립

○ 우리대학의 창업지원 역량을 확대 및 이익공유 기반 조성

- 법 인 명 : 아이앤유파트너스(INU Partners) (가칭)
- 설립유형 : 비영리재단법인
- 사업분야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초기 창업투자 및 보육사업
- 출 연 금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재 원 : 창업지원단

○ 조직구성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상근전문인력	비고
1명	1명	2명 이상 (준법감시인 포함)	신규 채용 없이 창업지원단 구성원 활용

나. 대학창업펀드 조성 및 운영

○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초기창업기업 육성과 성과확산

- 펀 드 명 : 아이앤유파트너스 1호 펀드 (가칭)
- 결성총액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 이상
- 운영기간 : 10년(투자 4년, 회수 4년, 청산 및 수익배분 2년) 이내
- 주목적투자 : 우리대학 학생·교원 창업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주요 출자자 구성(안)

연번	출자자	출자금액	출자지분율	비고
1	인천대학교 엑셀러레이터 (INU Partners)	200,000,000원	20%	업무집행조합원(GP) (※창업지원단 재원 활용)
2	인천광역시(투자창업과)	100,000,000원	10%	(2023년 시행 확정) 인천시 대학창업펀드 출자
3	(민간 또는 공공 출자금)	700,000,000원	70%	공동 업무집행조합원(Co-GP) 또는 유한책임투자자(LP)
합계		1,000,000,000원	100%	-

○ 민간 또는 공공 출자금 조달 방법

- 우리대학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동문 창업기업 참여

- 개인투자조합 투자자(출자자) 세제지원 정책을 활용

(개인)구분	세제지원	비고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3천만원 이하 : 100% ■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양도소득세 100% 면제 - 창업 5년 이내인 벤처기업 -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 기업 - 투자 후 3년 이상 보유 ■ 투자집행 후 3년 이내 소득 공제 신청 가능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50%	

○ 수익환원 방법 : 대학발전기금 납부(장학금, 연구비, 시설확충비 등)

-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과 수익이 대학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대학에서 창업지원 전문인력과 사업을 활용

다. 세부 추진일정



○ 심의결과 :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30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보고자:기획예산과장]

○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잉여금의 처분)에 의거 회계연도 결산 결과 생긴 잉여금 중 일부를 본교의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잔액 중 본교의 특정한 경영목적을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 적립금은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

○ 적립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는 재무경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적립금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함

○ 심의결과 :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3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보고자:기획예산과장]

○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잉여금의 처분)에 의거 적립금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입·세출 잔액 중 일부를 본교의 특정한 경영목적을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나. 적립금은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운용하며, 적립금은 기금으로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함 (안 제4조 및 제7조)

○ 주요 질의 및 응답

- 기타적립금을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로 기타적립금 사용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수정 요청함

⇒ ‘기타 목적의 적립금’ 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으로 수정함

○ 심의결과 : 수정가결

당 초	수 정
제4조(적립금의 종류)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1. 연구적립금: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적립금 2. 건축적립금: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를 위한 적립금 3. 장학적립금: 학생의 장학금을 위한 적립금 4. 퇴직적립금: 교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5. 기타적립금: 기타 목적의 적립금	제4조(적립금의 종류)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1. 연구적립금: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적립금 2. 건축적립금: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를 위한 적립금 3. 장학적립금: 학생의 장학금을 위한 적립금 4. 퇴직적립금: 교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5. 기타적립금: 기타 목적의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제5조(적립금의 운영 및 사용) ① 적립금은 세입·세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세입·세출 잔액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적립금 운영 및 사용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의 적립금 운영 및 사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적립금의 운영 및 사용) ① 적립금은 세입·세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세입·세출 잔액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적립금 운영 및 사용 계획을 작성하고,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의 적립금 운영 및 사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폐회선언

- 이상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위원장이 17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함